

지 방 교 부 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행 정 안 전 부 (교 부 세 과)
연 월 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방이전 및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, 산업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,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확보하는 한편, 시의성이 낮은 수요는 폐지·재조정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산정방식을 개편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정비(제10조의2)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

나.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신설·강화(별표4)

- 1)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착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
- 2) 지방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지역 수요 강화,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

다.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수요 확대(별표2, 별표4)

- 1) 인구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

- 2) 초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·양육환경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 반영률을 확대

라. 지방재정 건전화율 유도하기 위한 수요 개편(별표4, 별표6)

- 1)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, 보조금·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 산정방식을 추가(별표 6)
- 2)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및 밀반입 담배분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체납액을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방식을 합리화

마. 보정수요 구조조정(별표 4)

- 1) 재정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의성이 낮은 보정수요를 폐지·재조정
- 2) 재해복구 대응 등 보통교부세 제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산정방식을 합리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31. ~ 12. 12.)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별표1, 별표2, 별표4,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) ①·② (생략)	제10조의2(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	2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	나. ----- 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8조제1항 ----- ----- -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④ ----- ----- 한다.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 대비표 (별표)

[별표 1]

현행					개정안	
측정항목 · 측정단위별 단위비용(제4조제1항 관련)						
측정항목	측정단위	표시단위	지방자치단체	단위비용(단위 : 원)	지방자치단체	단위비용(단위 : 원)
1. 일반행정비	가. 인건비	공무원 수	명	특별시	특별시	<u>66,473,880</u>
				광역시	광역시	<u>66,473,880</u>
				특별자치시	특별자치시	<u>66,473,880</u>
				도	도	<u>56,803,770</u>
				시	시	<u>68,403,930</u>
				군	군	<u>68,385,180</u>
	나. 일반관리비	공무원 수	명	특별시	특별시	<u>23,241,330</u>
				광역시	광역시	<u>23,241,330</u>
				특별자치시	특별자치시	<u>23,241,330</u>
				도	도	<u>15,850,680</u>
				시	시	<u>33,303,620</u>
				군	군	<u>30,083,690</u>
	다. 안전관리비	인구 수	명	특별시	특별시	<u>29,310</u>
				광역시	광역시	<u>29,310</u>
				특별자치시	특별자치시	<u>29,310</u>
				도	도	<u>26,420</u>
				시	시	<u>34,620</u>
				군	군	<u>149,750</u>

현행						개정안	
2. 문 화 환 경 비	가. 문화관광비	인구 수	명	특별시	<u>97,830</u>	특별시	<u>97,830</u>
				광역시	<u>97,830</u>	광역시	<u>97,830</u>
				특별자치시	<u>97,830</u>	특별자치시	<u>97,830</u>
				도	<u>31,750</u>	도	<u>31,750</u>
	나. 환경보호비	인구 수	명	시	<u>107,040</u>	시	<u>107,040</u>
				군	<u>297,960</u>	군	<u>297,960</u>
				특별시	<u>100,280</u>	특별시	<u>100,280</u>
				광역시	<u>100,280</u>	광역시	<u>100,280</u>
				특별자치시	<u>100,280</u>	특별자치시	<u>100,280</u>
				도	<u>15,640</u>	도	<u>15,640</u>
				시	<u>142,310</u>	시	<u>142,310</u>
				군	<u>366,620</u>	군	<u>366,620</u>
3. 사 회 복 지 비	가. 기초생활보장비	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	명	특별시	<u>600,030</u>	특별시	<u>600,030</u>
				광역시	<u>600,030</u>	광역시	<u>600,030</u>
				특별자치시	<u>600,030</u>	특별자치시	<u>600,030</u>
				도	<u>265,920</u>	도	<u>265,920</u>
				시	<u>297,580</u>	시	<u>297,580</u>
				군	<u>409,890</u>	군	<u>409,890</u>
	나. 노인복지비	노령인구 수	명	특별시	<u>1,120,560</u>	특별시	<u>1,120,560</u>
				광역시	<u>1,120,560</u>	광역시	<u>1,120,560</u>
				특별자치시	<u>1,120,560</u>	특별자치시	<u>1,120,560</u>
				도	<u>164,600</u>	도	<u>164,600</u>
				시	<u>918,450</u>	시	<u>918,450</u>
				군	<u>1,027,950</u>	군	<u>1,027,950</u>

현행						개정안	
4.	다. 아동복지비	아동 수	명	특별시	<u>1,470,790</u>	특별시	<u>1,470,790</u>
				광역시	<u>1,470,790</u>	광역시	<u>1,470,790</u>
				특별자치시	<u>1,470,790</u>	특별자치시	<u>1,470,790</u>
				도	<u>302,080</u>	도	<u>302,080</u>
				시	<u>1,142,090</u>	시	<u>1,142,090</u>
				군	<u>1,761,730</u>	군	<u>1,761,730</u>
	라. 장애인복지비	등록장애인 수	명	특별시	<u>1,668,650</u>	특별시	<u>1,668,650</u>
				광역시	<u>1,668,650</u>	광역시	<u>1,668,650</u>
				특별자치시	<u>1,668,650</u>	특별자치시	<u>1,668,650</u>
				도	<u>219,870</u>	도	<u>219,870</u>
				시	<u>1,122,200</u>	시	<u>1,122,200</u>
				군	<u>1,085,410</u>	군	<u>1,085,410</u>
	마. 보건사회복지비	인구 수	명	특별시	<u>112,550</u>	특별시	<u>112,550</u>
				광역시	<u>112,550</u>	광역시	<u>112,550</u>
				특별자치시	<u>112,550</u>	특별자치시	<u>112,550</u>
				도	<u>36,910</u>	도	<u>36,910</u>
				시	<u>104,260</u>	시	<u>104,260</u>
				군	<u>240,910</u>	군	<u>240,910</u>
	가. 농업비	경지 면적	천제곱미터	특별시	<u>235,830</u>	특별시	<u>235,830</u>
				광역시	<u>235,830</u>	광역시	<u>235,830</u>
				특별자치시	<u>235,830</u>	특별자치시	<u>235,830</u>
				도	<u>67,260</u>	도	<u>67,260</u>
				시	<u>304,600</u>	시	<u>304,600</u>
				군	<u>305,460</u>	군	<u>305,460</u>

현행						개정안	
지 역 경 제 비	나. 임수산비	산림·어장·갯벌 면적	천제곱미터	특별시	<u>70,940</u>	특별시	<u>70,940</u>
				광역시	<u>70,940</u>	광역시	<u>70,940</u>
				특별자치시	<u>70,940</u>	특별자치시	<u>70,940</u>
				도	<u>79,480</u>	도	<u>79,480</u>
				시	<u>42,280</u>	시	<u>42,280</u>
				군	<u>37,830</u>	군	<u>37,830</u>
	다. 산업경제비	사업체 종사자 수	명	특별시	<u>208,870</u>	특별시	<u>208,870</u>
				광역시	<u>208,870</u>	광역시	<u>208,870</u>
				특별자치시	<u>208,870</u>	특별자치시	<u>208,870</u>
				도	<u>100,670</u>	도	<u>100,670</u>
				시	<u>153,230</u>	시	<u>153,230</u>
				군	<u>330,090</u>	군	<u>330,090</u>
	라. 도로관리비	도로 면적	천제곱미터	특별시	<u>5,036,560</u>	특별시	<u>5,036,560</u>
				광역시	<u>5,036,560</u>	광역시	<u>5,036,560</u>
				특별자치시	<u>5,036,560</u>	특별자치시	<u>5,036,560</u>
				도	<u>6,623,320</u>	도	<u>6,623,320</u>
				시	<u>6,335,650</u>	시	<u>6,335,650</u>
				군	<u>8,270,570</u>	군	<u>8,270,570</u>
	마. 교통관리비	자동차 대수	대	특별시	<u>141,200</u>	특별시	<u>141,200</u>
				광역시	<u>141,200</u>	광역시	<u>141,200</u>
				특별자치시	<u>141,200</u>	특별자치시	<u>141,200</u>
				도	<u>32,450</u>	도	<u>32,450</u>
				시	<u>184,800</u>	시	<u>184,800</u>
				군	<u>202,020</u>	군	<u>202,020</u>

현행						개정안	
	바. 지역관리비	행정구역 면적	천제곱미터	특별시	258,750	특별시	258,750
				광역시	258,750	광역시	258,750
				특별자치시	258,750	특별자치시	258,750
				도	6,460	도	6,460
				시	86,610	시	86,610
				군	39,530	군	39,530
※ 단위비용 산정방식 :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							

[별표 2]

현행				개정안					
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(제4조제2항 관련)									
경비의 종류		산정방식		비고(₩)		산정방식		비고(₩)	
1. 인건비		시·도 시·군 · 구	Yi = 기준인건비 × (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}}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(일반회계+특별회계)}}$) × ω	특별시(0.8148) 광역시(0.8041) 특별자치시(0.8034) 도(0.7958) 시(0.8019) 군(0.7856) 구(0.8243)		시·도 시·군 · 구	Yi = 기준인건비 × (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}}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(일반회계+특별회계)}}$) × ω	특별시(0.8148) 광역시(0.8041) 특별자치시(0.8034) 도(0.7958) 시(0.8019) 군(0.7856) 구(0.8243)	
			※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,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 인건비는 제외한다.				※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,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 인건비는 제외한다.		
2. 일반관리비		시·도	Yi = [-1165.57755 + 33.55778(Ge + La)] × ω	특별시(0.7298) 광역시(0.5831) 특별자치시(0.5835) 도(0.4708) 시(1.0042) 군(0.9310) 구(0.8079)		시·도	Yi = [-1165.57755 + 33.55778(Ge + La)] × ω	특별시(0.7298) 광역시(0.5831) 특별자치시(0.5835) 도(0.4708) 시(1.0042) 군(0.9310) 구(0.8079)	
			시·군 · 구				Yi = [-1165.57755 + 33.55778(Ge + La)] × ω		
		※ Ge: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, La: 지방의원 수			※ Ge: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, La: 지방의원 수				

현행				개정안			
3. 안전관리비	시·도	$\ln Y_i = [-1.53139 + 0.5968 \ln P + 0.65202 \ln(Df + Fs)] \times \ln \omega$	<u>특별시(0.4932)</u> <u>광역시(0.6454)</u> <u>특별자치시(0.7828)</u> <u>도(0.8089)</u> <u>시(0.9904)</u> <u>군(0.8522)</u> <u>구(0.6017)</u>	시·도	$\ln Y_i = [-1.53139 + 0.5968 \ln P + 0.65202 \ln(Df + Fs)] + \ln \omega$	<u>특별시(0.4932)</u> <u>광역시(0.6454)</u> <u>특별자치시(0.7828)</u> <u>도(0.8089)</u> <u>시(0.9904)</u> <u>군(0.8522)</u> <u>구(0.6017)</u>	
	특별자치시	$\ln Y_i = [-1.53139 + 0.5968 \ln P + 0.65202 \ln(Df + Fs)] \times \ln \omega + 0.01066 Sr$		특별자치시	$\ln Y_i = [-1.53139 + 0.5968 \ln P + 0.65202 \ln(Df + Fs)] + \ln \omega + 0.01066 Sr$		
	시·군·구	$Y_i = [(876.97443 + 0.01428 P + 0.00922 A + 0.00574 Sr)] \times \omega$		시·군·구	$Y_i = [(876.97443 + 0.01428 P + 0.00922 A + 0.00574 Sr)] \times \omega$		
	※ P: 인구 수, A: 행정구역 면적, Df: 재난관리대상시설 수, Fs: 소방관서 수, Sr: 소화전 길이			※ P: 인구 수, A: 행정구역 면적, Df: 재난관리대상시설 수, Fs: 소방관서 수, Sr: 소화전 길이			
4. 문화관광비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	$Y_i = (24933 + 0.03392 P + 0.00214 A) \times \omega$	<u>특별시(0.7169)</u> <u>광역시(1.1079)</u> <u>특별자치시(0.9009)</u> <u>도(0.7477)</u> <u>시(0.8912)</u> <u>군(0.6684)</u> <u>구(0.7346)</u>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	$Y_i = (24933 + 0.03392 P + 0.00214 A) \times \omega$	<u>특별시(0.7169)</u> <u>광역시(1.1079)</u> <u>특별자치시(0.9009)</u> <u>도(0.7477)</u> <u>시(0.8912)</u> <u>군(0.6684)</u> <u>구(0.7346)</u>	
	도	$Y_i = (45880 + 0.01317 P + 0.00494 A) \times \omega$		도	$Y_i = (45880 + 0.01317 P + 0.00494 A) \times \omega$		
	시·군·구	$\ln Y_i = (0.93941 + 0.38677 \ln P + 0.37167 \ln A) \times \ln \omega$		시·군·구	$\ln Y_i = (0.93941 + 0.38677 \ln P + 0.37167 \ln A) + \ln \omega$		
	※ P: 인구 수, A: 행정구역 면적			※ P: 인구 수, A: 행정구역 면적			

현행				개정안			
5. 환경보호비	시·도	$\ln Y_i = (3.59978 + 0.37955 \ln P + 0.17663 \ln A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1.2672) 광역시(0.6558) 특별자치시 (0.8394) 도(0.3048) 시(0.9626) 군(0.8331) 구(0.7209)	시·도	$\ln Y_i = (3.59978 + 0.37955 \ln P + 0.17663 \ln A) + \ln \omega$	특별시(1.2672) 광역시(0.6558) 특별자치시 (0.8394) 도(0.3048) 시(0.9626) 군(0.8331) 구(0.7209)	
	시·군·구	$\ln Y_i = (1.28297 + 0.48926 \ln P + 0.26199 \ln A) \times \ln \omega$		시·군·구	$\ln Y_i = (1.28297 + 0.48926 \ln P + 0.26199 \ln A) + \ln \omega$		
	※ P: 인구 수, A: 행정구역 면적			※ P: 인구 수, A: 행정구역 면적			
6. 기초생활보장비	시·도	$\ln Y_i = (-0.48693 + 0.97952 \ln BI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1.2983) 광역시(0.6581) 특별자치시 (0.8498) 도(0.5634) 시(0.8017) 군(0.7354) 구(0.8379)	시·도	$\ln Y_i = (-0.48693 + 0.97952 \ln BI) + \ln \omega$	특별시(1.2983) 광역시(0.6581) 특별자치시 (0.8498) 도(0.5634) 시(0.8017) 군(0.7354) 구(0.8379)	
	시·군·구	$Y_i = (1620.33375 + 0.31532 BI) \times \omega$		시·군·구	$Y_i = (1620.33375 + 0.31532 BI) \times \omega$		
	※ BI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(생계+의료+주거+교육)			※ BI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(생계+의료+주거+교육)			
7. 노인복지비	시·도	$Y_i = (62216 + 0.33631 Sc) \times \omega$	특별시(0.7180) 광역시(1.0651) 특별자치시 (0.3356) 도(0.3749) 시(0.9820) 군(0.8222) 구(0.7122)	시·도	$Y_i = (62216 + 0.33631 Sc) \times \omega$	특별시(0.7180) 광역시(1.0651) 특별자치시 (0.3356) 도(0.3749) 시(0.9820) 군(0.8222) 구(0.7122)	
	특별자치시	$Y_i = (62216 + 0.33631 Sc) \times \omega + 4.53999 Sh$		특별자치시	$Y_i = (62216 + 0.33631 Sc) \times \omega + 4.53999 Sh$		
	시·군·구	$\ln Y_i = (1.84791 + 0.73983 \ln Sc + 0.15543 \ln Sh) \times \ln \omega$		시·군·구	$\ln Y_i = (1.84791 + 0.73983 \ln Sc + 0.15543 \ln Sh) + \ln \omega$		
	※ Sc: 노령인구 수, Sh: 경로당 수(신고)			※ Sc: 노령인구 수, Sh: 경로당 수(신고)			

현행				개정안			
8. 아동복지비	시·도	$\ln Y_i = (1.53997 + 0.84816 \ln Ch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1.2159) 광역시(0.7461)	시·도	$\ln Y_i = (1.53997 + 0.84816 \ln Ch) + \ln \omega$	특별시(1.2159) 광역시(0.7461)	
	시·군·구	$\ln Y_i = (2.71901 + 0.77409 \ln Ch) \times \ln \omega$	특별자치시(0.9661) 도(0.5081) 시(0.9352) 군(0.8984) 구(0.7698)	시·군·구	$\ln Y_i = (2.71901 + 0.77409 \ln Ch) + \ln \omega$	특별자치시(0.9661) 도(0.5081) 시(0.9352) 군(0.8984) 구(0.7698)	
	※ Ch: 아동 수			※ Ch: 아동 수			
9. 장애인 복지비	시·도	$\ln Y_i = (4.24088 + 0.6069 \ln Dp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1.9677) 광역시(1.1165)	시·도	$\ln Y_i = (4.24088 + 0.6069 \ln Dp) + \ln \omega$	특별시(1.9677) 광역시(1.1165)	
	시·군·구	$Y_i = (-96.47169 + 1.28756 Dp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(0.5824) 도(0.3970) 시(0.8756) 군(0.8574) 구(0.7240)	시·군·구	$Y_i = (-96.47169 + 1.28756 Dp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(0.5824) 도(0.3970) 시(0.8756) 군(0.8574) 구(0.7240)	
	※ Dp: 등록장애인 수			※ Dp: 등록장애인 수			
10. 보건사회 복지비	시·도	$\ln Y_i = (-0.92788 + 0.8875 \ln P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1.3000) 광역시(0.6946) 특별자치시(0.8065) 도(0.5286) 시(0.9048) 군(0.8087) 구(0.7012)	시·도	$\ln Y_i = (-0.92788 + 0.8875 \ln P) + \ln \omega$	특별시(1.3000) 광역시(0.6946) 특별자치시(0.8065) 도(0.5286) 시(0.9048) 군(0.8087) 구(0.7012)	
	특별자치시	$\ln Y_i = (-0.92788 + 0.8875 \ln P) \times \ln \omega + 0.65869 Hf$		특별자치시	$\ln Y_i = (-0.92788 + 0.8875 \ln P) + \ln \omega + 0.65869 Hf$		
	시·군·구	$Y_i = (-1326.08923 + 0.07155 P + 1.43455 Hf) \times \omega$		시·군·구	$Y_i = (-1326.08923 + 0.07155 P + 1.43455 Hf) \times \omega$		
	※ P: 인구 수, Hf: 보건시설 면적			※ P: 인구 수, Hf: 보건시설 면적			

현행				개정안			
11. 농업비	시·도	$\ln Y_i = (3.50254 + 0.57884 \ln Ac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1.2812) 광역시(0.6592)	시·도	$\ln Y_i = (3.50254 + 0.57884 \ln Ac) + \ln \omega$	특별시(1.2812) 광역시(0.6592)	
	시·군 · 구	$Y_i = (2408.83803 + 0.28258 Ac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5705) 도(0.9658) 시(1.0015) 군(1.0095) 구(0.3108)	시·군 · 구	$Y_i = (2408.83803 + 0.28258 Ac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5705) 도(0.9658) 시(1.0015) 군(1.0095) 구(0.3108)	
	※ Ac: 경지 면적(전+답+과)			※ Ac: 경지 면적(전+답+과)			
12. 임수산비	시·도	$Y_i = [20661 + 0.17914 F_o + 0.02082(F_g + M_f)] \times \omega$	특별시(0.0000) 광역시(0.5937)	시·도	$Y_i = [20661 + 0.17914 F_o + 0.02082(F_g + M_f)] \times \omega$	특별시(0.0000) 광역시(0.5937)	
	시·군 · 구	$Y_i = [3062.54905 + 0.02473 F_o + 0.05402(F_g + M_f)]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1256) 도(0.9263) 시(1.1102) 군(1.0135) 구(0.3798)	시·군 · 구	$Y_i = [3062.54905 + 0.02473 F_o + 0.05402(F_g + M_f)]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1256) 도(0.9263) 시(1.1102) 군(1.0135) 구(0.3798)	
	※ Fo: 산림 면적, Fg: 어장 면적, Mf: 갯벌 면적			※ Fo: 산림 면적, Fg: 어장 면적, Mf: 갯벌 면적			
13. 산업경제비	시·도	$\ln Y_i = (4.58725 + 0.54203 \ln Ce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0.5170) 광역시(1.0143)	시·도	$\ln Y_i = (4.58725 + 0.54203 \ln Ce) + \ln \omega$	특별시(0.5170) 광역시(1.0143)	
	시·군 · 구	$Y_i = (5497.25154 + 0.05542 Ce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5064) 도(0.7403) 시(1.5998) 군(1.1099) 구(0.2442)	시·군 · 구	$Y_i = (5497.25154 + 0.05542 Ce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5064) 도(0.7403) 시(1.5998) 군(1.1099) 구(0.2442)	
	※ Ce: 사업체 종사자 수			※ Ce: 사업체 종사자 수			

현행				개정안			
14. 도로관리비	시·도	$\ln Y_i = (5.6256 + 0.61132 \ln Ro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0.4473) 광역시(0.7422)	시·도	$\ln Y_i = (5.6256 + 0.61132 \ln Ro) + \ln \omega$	특별시(0.4473) 광역시(0.7422)	
	시·군·구	$Y_i = (6792.21255 + 3.89591 Ro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8655) 도(1.0241) 시(1.1746) 군(0.8842) 구(0.6154)	시·군·구	$Y_i = (6792.21255 + 3.89591 Ro) \times \omega$	특별자치시 (0.8655) 도(1.0241) 시(1.1746) 군(0.8842) 구(0.6154)	
	※ Ro: 도로(포장+비포장+미개통) 면적			※ Ro: 도로(포장+비포장+미개통) 면적			
15. 교통관리비	시·도	$\ln Y_i = (3.83858 + 0.52545 \ln Ca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0.4371) 광역시(1.9372)	시·도	$\ln Y_i = (3.83858 + 0.52545 \ln Ca) + \ln \omega$	특별시(0.4371) 광역시(1.9372)	
	특별자치시	$\ln Y_i = (3.83858 + 0.52545 \ln Ca) \times \ln \omega + 0.01857 A$	특별자치시 (0.3149)	특별자치시	$\ln Y_i = (3.83858 + 0.52545 \ln Ca) + \ln \omega + 0.01857 A$	특별자치시 (0.3149)	
	시·군·구	$\ln Y_i = (-6.43115 + 0.64511 \ln Ca + 0.64668 \ln A) \times \ln \omega$	도(0.6901) 시(1.8517) 군(0.9529) 구(0.6618)	시·군·구	$\ln Y_i = (-6.43115 + 0.64511 \ln Ca + 0.64668 \ln A) + \ln \omega$	도(0.6901) 시(1.8517) 군(0.9529) 구(0.6618)	
	※ Ca: 자동차 대수, A: 행정구역 면적			※ Ca: 자동차 대수, A: 행정구역 면적			
16. 지역관리비	특별시·광역시·시	$\ln Y_i = (2.00667 + 0.34005 \ln A + 0.3289 \ln P) \times \ln \omega$	특별시(7.4584) 광역시(1.1903)	특별시·광역시·시	$\ln Y_i = (2.00667 + 0.34005 \ln A + 0.3289 \ln P) + \ln \omega$	특별시(7.4584) 광역시(1.1903)	
	특별자치시	$\ln Y_i = (2.00667 + 0.34005 \ln A + 0.3289 \ln P) \times \ln \omega + 0.03525 Ri$	특별자치시 (1.0093)	특별자치시	$\ln Y_i = (2.00667 + 0.34005 \ln A + 0.3289 \ln P) + \ln \omega + 0.03525 Ri$	특별자치시 (1.0093)	
	도	$Y_i = (49518 + 0.00151 A + 0.00631 P) \times \omega$	도(0.8384) 시(1.1407)	도	$Y_i = (49518 + 0.00151 A + 0.00631 P) \times \omega$	도(0.8384) 시(1.1407)	
	시·군·구	$Y_i = (830.78431 + 0.02186 A + 0.06222 P + 0.05498 Ri) \times \omega$	군(0.9285) 구(0.6960)	시·군·구	$Y_i = (830.78431 + 0.02186 A + 0.06222 P + 0.05498 Ri) \times \omega$	군(0.9285) 구(0.6960)	
	※ A: 행정구역 면적, P: 인구 수, Ri: 하천 길이			※ A: 행정구역 면적, P: 인구 수, Ri: 하천 길이			

현행	개정안
비고 1.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<u>6개월간</u>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. 2. ω는 경비별·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. 3.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.	비고 1.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<u>36개월간</u>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. 2. ω는 경비별·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. 3.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.

[별표 4] - 전문개정 <개정 전>

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(제5조제2항제4호 관련)

유형별 측정항목		산정방식
1. 지역균형		
가. 농업종사자 (시·군·구)		- 농업종사자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촌예산* 일반재원 × 5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농업·농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나. 어업종사자 (시·군·구)		- 어업종사자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어촌예산* 일반재원 × 5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해양수산·어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다. 방조제, 배수갑문 (시·군·구)		$Y_i = 7.88725 - 0.00376 S_w + 6.11605 S_d$ ※ S_w: 방조제 길이, S_d: 배수갑문 수
라. 방파제, 물양장(物揚場) (시·군·구)		$Y_i = 65.18635 + 0.12211 B_w + 0.31218 L_w$ ※ B_w: 방파제 길이, L_w: 물양장 길이
마. 농어촌도로 (시·군)		전전년도 농어촌도로(포장+비포장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면적 1천㎡당 도로관리비 표준행 정수요액 × 10%
바. 해안지역 (시·군·구)		$Y_i = 58.2126 + 0.00271 C_o$ ※ C_o: 해안선 길이
사. 댐지역 (시·군·구)		$Y_i = 80.20297 + 0.07216 D_a - 0.00559 D_c$ ※ D_a: 댐 면적, D_c: 댐 연접지역(읍·면·동) 인구 수
아. 축산 (시·군·구)		$\left[\text{축산 마릿수} \left(\text{소} + \text{돼지} \times \frac{1}{3} \right) + \text{가금류 마릿수} \left(\text{닭} + \text{오리} \times \frac{1}{80} \right) \right]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(소) 마릿수 1마 리당 축산예산* 일반재원} \times 50\%$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자. 도축 (시·군·구)	• $[\text{도축 축산 마릿수}(\text{소}+\text{돼지}\times A) + \text{도축 가금류 마릿수}(\text{닭}\times B+\text{오리}\times C)]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축 축산 마릿수 1 마리당 축산예산* 일반재원} \times 15\%$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A, B, C: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소 대비 중량 비중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차. 마을상수도 (시·군·구)	• $\text{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}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}$ ※ 광역시에 속한 ‘군’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.
카. 낙후지역 등 (시·군·구)	① 일반관리 지원 • $\{[(\text{섬}(\text{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 이하 1-11 낙후지역 등란에서 같다}), \text{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 수}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 \times 70\%] + [(\text{섬}, \text{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}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 \times 30\%]\} \times 105\%$ ② 지역관리 지원 • $(\text{섬}, \text{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}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 \times 105\%$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③ 대중교통 지원 • $\{[(\text{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 수}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 \times 25\%] + [(\text{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}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 \times 25\%]\}$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	④ 접경지역 • 접경지역(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40% ※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(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)가 0.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%만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10%는 시·도, 9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⑤ 성장촉진지역 • [(성장촉진지역(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인구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70% + (성장촉진지역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30%] × 40% ※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·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.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, 산정액의 50%만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10%는 시·도, 9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⑥ 폐광지역진흥지구 • 폐광지역진흥지구(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40% ※ 수요 산정액의 10%는 시·도, 9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.
타. 인구감소지역 (시·군)	• $(\text{인구감소지수}/100)^2 \times [(\text{지방자치단체 면적} \times \text{시·군 행정구역 면적 } 1\text{천㎡당 평균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] \times 30\%$
파. 보호 및 규제구역 (시·군·구)	① 문화재보호구역 • 문화재보호구역(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보호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면적 ×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× 20%

		② 환경보호 규제지역 • 환경보호 규제지역* 면적 ×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× 20% * “환경보호 규제지역”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), 상수원보호구역(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), 수변구역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을 말한다) 및 백두대간보호지역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말한다)을 말한다. ③ 지역개발 규제지역 • 개발제한구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, 비행안전구역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면적 ×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× 20% ※ 개발제한구역 수요 산정액은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,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2. 지역관리		
	가. 보정인구 1 (시·군·구)	• 보정인구 1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+B+C)* * A: 환경보호비, B: 도로관리비, C: 지역관리비 ※ 보정인구 1 = 군인수(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) + 의무경찰 수 + 의무소방대원 수 + 수용자수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	나. 보정인구 2 (시·군·구)	• 보정인구 2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인력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0% ※ 보정인구 2(안전관리인력) =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수 + 특별사법경찰 수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다. 보정인구 3 (시·군·구)	• 보정인구 3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 + B)* × 105% * A: 환경보호비, B: 지역관리비 ※ 보정인구 3 = 등록외국인 수 +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라. 유동인구 (시·군·구)	• 유동인구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 + B + C)* × 20% * A: 환경보호비, B: 도로관리비, C: 지역관리비 ※ 유동인구 = 유입인구 - 유출인구 (다만,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마. 시·도지정문화재 (시·군·구)	• 시·도지정문화재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1개당 문화재 예산* 일반재원 × 5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문화재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바. 폐기물 (시·군·구)	• [폐기물 처리량(매립 + 소각 + 재활용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0%] + (수질 정화량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㎥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%)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사. 공원 (시·군·구)	① 자연공원 • 자연공원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② 도시공원 • 도시공원 관리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0%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아. 산업지역 (시·군·구)	① 산업단지·기업도시 • 산업단지·기업도시(산업시설용지) 분양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0% ② 도심지 내 공장밀집지역 •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
3. 사회복지	
가.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(시·군·구)	•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 ×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igma A}$ * $A = \left(1 - \frac{\text{maxX} - Y}{\text{maxX} - \text{minX}}\right) \times \text{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나. 노령인구 비율 (시·군·구)	•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 ×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igma A}$

	$* A = (1 - \frac{\text{maxX} - Y}{\text{maxX} - \text{minX}}) \times \text{노령인구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%,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%,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%,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% 추가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다. 노인요양시설 (시·도)	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: $Y_i = 4576.03652 + 1.29919 R_a$ • 도: $Y_i = 8706.46811 + 2.71237 R_a$ ※ R_a: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
라. 아동인구 비율 (시·군·구)	•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$\times 30\% \times$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um A}$ $* A = (1 - \frac{\text{maxX} - Y}{\text{maxX} - \text{minX}}) \times \text{아동인구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마. 출산장려 (시·군·구)	• 0세 아동 수 ×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50%,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0%,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%, 합계출산율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200%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바. 가정위탁보호아동 (시·군·구)	•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사. 장애인 비율 (시·군·구)	•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 ×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igma A}$ * $A = (1 - \frac{\text{maxX} - Y}{\text{maxX} - \text{minX}}) \times \text{장애인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아. 다문화 (시·군·구)	• (등록외국인 수 + 국적취득자 수 + 국제결혼가정자녀 수 + 북한이탈주민 수 +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자. 저소득 한부모가족 (시·군·구)	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 + B)* * A: 보건사회복지비, B: 기초생활보장비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4. 시책수요 등		
	가. 정규직 전환	•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환인원 × 전전년도 1인당 정규직 전환비용(전국공통비용) ※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	나. 취약계층보호구역 (시·군·구)	• 취약계층 보호구역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 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% ※ “취약계층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. ※ 수요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	다. 고용감소지역 (시·군·구)	•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(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(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) 1인당 일반재원* × 120% * 고용감소지역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, 산업·중소기업, 산업단지, 평생·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, 2023년도분의 가중치는 120%를 50%로 변경 적용한다.
	라.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(시·군·구)	•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(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÷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개소 수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개소 수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마. 일자리 (시·군·구)	• (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업률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평균액) × 3%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률 × 조정계수*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평균액] × 3% * 조정계수 = $\frac{\text{동종 지자체 평균 실업률}}{\text{동종 지자체 평균 고용률}}$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바. 재난안전투자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총예산 대비 안전·보건 예산*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× 1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,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사. 버스재정지원 (시·도)	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× 내국세 증감률 ※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아.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× 30%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자. 미세먼지 (시·군·구)	• [(해당 지방자치단체 A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2%]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B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%]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C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%] ※ A =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/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결산총액

	※ B: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* * 대기오염 일수는 PM2.5가 36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,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. ※ C: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(TMS) 등으로 측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차. 지역균형뉴딜 (시·군·구)	• [(해당 지방자치단체 A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) $\times$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$\times$ 4%]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B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) $\times$ 동종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1toe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$\times$ 3%] ※ A: 수소·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※ B: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※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카. 재해복구 대응 (시·군·구)	• 전전년도 특별재난지역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) 지원복구비의 지방비 중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부담액 $\times$ 20% ※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타.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[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(자체재원)의 결산액] $\times$ 10% ※ 2024년 결산분까지만 적용한다.

비고

1.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범위는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(面) 평균 이하인 읍·면(邑、面) 지역(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2.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, 시청·군청 소재지가 섬[연륙도서(連陸島嶼)는 제외한다]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수요 산정액의 500% 범위에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.
3. 고령단체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- 가. 고령단체 1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% 이상, 14% 미만인 경우
- 나. 고령단체 2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% 이상, 20% 미만인 경우
- 다. 고령단체 3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% 이상, 25% 미만인 경우
- 라. 고령단체 4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% 이상인 경우

4.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- 가. 합계출산율 1유형: 합계출산율이 0.92명 이상 1.12명 미만인 경우
- 나. 합계출산율 2유형: 합계출산율이 1.12명 이상 1.32명 미만인 경우
- 다. 합계출산율 3유형: 합계출산율이 1.32명 이상 1.52명 미만인 경우
- 라. 합계출산율 4유형: 합계출산율이 1.52명 이상인 경우

5. 문화재보호구역, 환경보호 규제지역,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% 이상인 경우에는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%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.

- 가. 행정구역 면적의 50% 이상 60% 미만인 경우: 10%
- 나. 행정구역 면적의 60% 이상 70% 미만인 경우: 20%
- 다. 행정구역 면적의 70% 이상 80% 미만인 경우: 30%
- 라. 행정구역 면적의 80% 이상 90% 미만인 경우: 40%
- 마. 행정구역 면적의 90% 이상인 경우: 50%

[별표 4] - 전문개정 <개정 후>

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(제5조제2항제4호 관련)

유형별 측정항목		산정방식
1. 지역균형		
가. 농업종사자 (시·군·구)		- 농업종사자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촌예산* 일반재원 × 5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농업·농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나. 어업종사자 (시·군·구)		- 어업종사자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어촌예산* 일반재원 × 5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해양수산·어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다. 방조제, 배수갑문 (시·군·구)		[(방조제길이 × 해당 단체별 방조제 관련 일반재원) + (배수갑문 수 × 해당 단체별 배수갑문 관련 일반재원)] × 30%
라. 방파제, 물양장(物揚場) (시·군·구)		방파제 및 물양장 길이 × 해당 단체별 방파제 및 물양장 관련 일반재원 × 30%
마. 농어촌도로 (시·군)		전전년도 농어촌도로(포장+비포장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면적 1천㎡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0%
바. 해안지역 (시·군·구)		해안선 길이 × 해당 단체별 해안선 관련 일반재원 × 50%
사. 댐지역 (시·군·구)		[(댐 면적 × 해당 단체별 댐 환경보호 관련 일반재원) + (댐 연접 인구 수 × 댐 연접지역 주민 보건 관련 일반재원)] × 100%
아. 축산 (시·군·구)		$[\text{축산 마릿수}(\text{소}+\text{돼지} \times \frac{1}{3}) + \text{가금류 마릿수}(\text{닭} \cdot \text{오리} \times \frac{1}{80})] \times 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(소)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* 일반재원} \times 50\%$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자. 도축 (시·군·구)	• [도축 축산 마릿수(소+돼지×A) + 도축 가금류 마릿수(닭×B+오리×C)]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축 축산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* 일반재원 × 15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A, B, C: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소 대비 중량 비중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차. 마을상수도 (시·군·구)	•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광역시에 속한 ‘군’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.
카. 낙후지역 등 (시·군·구)	① 일반관리 지원 • {(섬,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 이하 1-11 낙후지역 등란에서 같다),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70%} + [(섬,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30%]} × 105% ② 지역관리 지원 • (섬,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105%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③ 대중교통 지원 • {(섬,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25%} + [(섬,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25%]}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	④ 접경지역 • 접경지역(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40% ※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(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)가 0.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%만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10%는 시·도, 9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⑤ 성장촉진지역 • [(성장촉진지역(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인구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70% + (성장촉진지역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30%] × 40% ※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·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.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, 산정액의 50%만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10%는 시·도, 9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⑥ 폐광지역진흥지구 • 폐광지역진흥지구(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)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40% ※ 수요 산정액의 10%는 시·도, 9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.
타. 인구감소지역 (시·군)	• $(\text{인구감소지수}/100)^2 \times [(\text{지방자치단체 면적} \times \text{시·군 행정구역 면적 } 1\text{천㎡당 평균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})] \times 50\%$
파. 보호 및 규제구역 (시·군·구)	① 문화재보호구역 • 문화재보호구역(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보호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면적 × 120% ×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× 20%

		② 환경보호 규제지역 • 환경보호 규제지역* 면적 × 120% ×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× 20% * “환경보호 규제지역”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), 상수원보호구역(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), 수변구역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을 말한다) 및 백두대간보호지역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말한다)을 말한다. ③ 지역개발 규제지역 • 개발제한구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한다.) 면적 × 120% ×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× 20% ※ 개발제한구역 수요 산정액은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,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2. 지역관리		
	가. 보정인구 (시·군·구)	① 군인 등 • (군인*, 의무경찰×5/12, 의무소방대원×6/12, 수용자 수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+B+C)** * 군인에는 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. ** A: 환경보호비, B: 도로관리비, C: 지역관리비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② 안전관리인력 • (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, 특별사법경찰 수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인력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0%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	③ 외국인 • (등록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자 수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 + B)* × 105% * A: 환경보호비, B: 지역관리비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나. 유동인구 (시·군·구)	• 유동인구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 + B + C)* × 20% * A: 환경보호비, B: 도로관리비, C: 지역관리비 ※ 유동인구 = 유입인구 - 유출인구 (다만,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다. 시·도지정문화재 (시·군·구)	• 시·도지정문화재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1개당 문화재 예산* 일반재원 × 5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문화재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라. 폐기물 (시·군·구)	• [폐기물 처리량(매립 + 소각 + 재활용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10%] + (수질 정화량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㎥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%)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마. 공원 (시·군·구)	① 자연공원 • 자연공원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② 도시공원 • 도시공원 관리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0%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바. 산업지역 (시·군·구)	① 산업단지·기업도시·혁신도시 -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·혁신도시(산업시설용지) 분양면적 × (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+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) × 50% ② 도심지 내 공장밀집지역 -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㎡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
3. 사회복지	
가.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(시·군·구)	-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 ×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igma A}$ * $A = (1 - \frac{\text{maxX} - Y}{\text{maxX} - \text{minX}}) \times \text{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나. 노령인구 비율 (시·군·구)	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 ×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igma A}$

	$* A = (1 - \frac{\max X - Y}{\max X - \min X}) \times \text{노령인구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%,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%,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%,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% 추가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다. 노인요양시설 (시·도)	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: $Y_i = 4576.03652 + 1.29919 R_a$ • 도: $Y_i = 8706.46811 + 2.71237 R_a$ ※ R_a: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
라. 아동인구 비율 (시·군·구)	•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$\times 30\% \times$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um A}$ $* A = (1 - \frac{\max X - Y}{\max X - \min X}) \times \text{아동인구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마. 출산장려 (시·군·구)	• 0세 아동 수 ×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75%,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%,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225%, 합계출산율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300% 반영한다.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바. 가정위탁보호아동 (시·군·구)	•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사. 장애인 비율 (시·군·구)	•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 × $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 } A^*}{\text{동종 지방자치단체 } \Sigma A}$ * $A = (1 - \frac{\text{maxX} - Y}{\text{maxX} - \text{minX}}) \times \text{장애인 수}$ ※ max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minX: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, Y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(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%를 가중하되,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)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아. 다문화 (시·군·구)	• (등록외국인 수 + 국적취득자 수 + 국제결혼가정자녀 수 + 북한이탈주민 수 +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자. 저소득 한부모가족 (시·군·구)	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(A + B)* * A: 보건사회복지비, B: 기초생활보장비 ※ 수요 산정액의 50%는 시·도, 5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4. 시책수요 등

가. 취약계층보호구역 (시·군·구)	- 취약계층 보호구역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 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5% ※ “취약계층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. ※ 수요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나. 고용감소지역 (시·군·구)	-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(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(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) 1인당 일반재원* × 120% * 고용감소지역(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, 산업·중소기업, 산업단지, 평생·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, 2023년도분의 가중치는 120%를 50%로 변경 적용한다.
다. 일자리 (시·군·구)	(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업률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평균액) × 3%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률 × 조정계수*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평균액] × 3% * 조정계수 = $\frac{\text{동종 지자체 평균 실업률}}{\text{동종 지자체 평균 고용률}}$ ※ 수요 산정액의 30%는 시·도, 7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라. 재난안전투자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총예산 대비 안전·보건 예산*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× 10% *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,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마. 버스재정지원 (시·도)	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전액 × 내국세 증감률 ※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바.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× 50% ※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사. 미세먼지 (시·군·구)	• [(해당 지방자치단체 A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2%]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B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× 2%]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C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× 4%] + [(해당 지방자치단체 D /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) ×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%] ※ A =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/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총액 ※ B: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* * 대기오염 일수는 PM2.5가 36μg/m³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,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. ※ C: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※ D: 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※ 수요 산정액의 40%는 시·도, 6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
아. 재해복구 대응 (시·군·구)	• [(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수 × 동종자치단체 인구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× 30%) + (면적 × 동종자치단체 안전관리비 면적 1천㎡당 표준행정수요액) × 70%] × 20%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														
자.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(자체재원)의 결산액] × 10% ※ 2024년 결산분까지만 적용한다.														
차. 기업 지방이전 지원 (시·도, 시·군·구)	• 대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* × 300% *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감면액														
카. 소상공인 지원 (시·군·구)	• 소상공인 종사자 수 ×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× 20% × 재정자립도 반영률 ※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. <table><tr><td>재정 자립도</td><td>10%미만</td><td>10%이상 ~ 20%미만</td><td>20%이상 ~30%미 만</td><td>30%이상 ~ 40%미만</td><td>40%이상 ~50%미 만</td><td>50%이상</td></tr><tr><td>반영률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60%</td><td>50%</td></tr></table> ※ 수요 산정액의 20%는 시·도, 80%는 해당 시·군·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	재정 자립도	10%미만	10%이상 ~ 20%미만	20%이상 ~30%미 만	30%이상 ~ 40%미만	40%이상 ~50%미 만	50%이상	반영률	100%	90%	80%	70%	60%	50%
재정 자립도	10%미만	10%이상 ~ 20%미만	20%이상 ~30%미 만	30%이상 ~ 40%미만	40%이상 ~50%미 만	50%이상									
반영률	100%	90%	80%	70%	60%	50%									

비고

1.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범위는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(面) 평균 이하인 읍·면(邑、面) 지역(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2.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, 시청·군청 소재지가 섬[연륙도서(連陸島嶼)는 제외한다]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수요 산정액의 500% 범위에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.

3. 고령단체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- 가. 고령단체 1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% 이상, 14% 미만인 경우
- 나. 고령단체 2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% 이상, 20% 미만인 경우
- 다. 고령단체 3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% 이상, 25% 미만인 경우
- 라. 고령단체 4유형: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% 이상인 경우

4.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- 가. 합계출산율 1유형: 합계출산율이 0.81명 이상 1.01명 미만인 경우
- 나. 합계출산율 2유형: 합계출산율이 1.01명 이상 1.21명 미만인 경우
- 다. 합계출산율 3유형: 합계출산율이 1.21명 이상 1.41명 미만인 경우
- 라. 합계출산율 4유형: 합계출산율이 1.41명 이상인 경우

5. 문화재보호구역, 환경보호 규제지역,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(비행안전구역은 제외)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% 이상인 경우에는 1천㎡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%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.

- 가. 행정구역 면적의 50% 이상 60% 미만인 경우: 10%
- 나. 행정구역 면적의 60% 이상 70% 미만인 경우: 20%
- 다. 행정구역 면적의 70% 이상 80% 미만인 경우: 30%
- 라. 행정구역 면적의 80% 이상 90% 미만인 경우: 40%
- 마. 행정구역 면적의 90% 이상인 경우: 50%

[별표 6]

현행		개정안
<u>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(제8조 관련)</u> 1. 세출 효율화		<u>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(제8조 관련)</u> 1. 세출 효율화
반영항목	산정방식	산정방식
가. 인건비 건전 운영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÷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절감액 ※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·사회복지·생활안전 분야,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※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. ※ 일반회계,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 (신설)	① 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÷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절감액 <u>× 200%</u> ※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·사회복지·생활안전 분야,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※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. ② (1-<u>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÷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</u>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※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 ※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 ※ ①, ②는 일반회계,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
나. 지방의회경비 절감	(생략)	(현행과 같음)

다. 업무추진비 절감	(생략)	(현행과 같음)
라. 행사·축제성 경비 절감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÷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※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, 전국체전·소년체전·장애인체전,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·축제,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. (신설)	① 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÷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× 50% ※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중위단체의 행사·축제성 경비 비중*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사·축제성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, 결과값을 0으로 본다. * 경비 비중 = 행사·축제성 경비 결산액 / 총 결산액 ※ ①, ②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, 전국체전·소년체전·장애인체전,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·축제,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.
마. 지방보조금 절감	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÷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50% ※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(이양)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	① (1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÷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50% ※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(이양)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

	<u>2022년도</u>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, <u>2023년도</u>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. ※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 (신설)	<u>2026년도</u>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, <u>2027년도</u>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전전년도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 × 5% ※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중위단체의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*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, 결과값을 0으로 본다. * 경비 비중 = 지방보조금 결산액 / 총 결산액 ※ ①, ②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.
바. 예산집행 노력	(생략)	(현행과 같음)
(신설) 사. 현금성 복지 지경비 지출운영	(신설)	(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중위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* 지출결산액 비중) ×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*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※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.
비고 1~4. (생략) 5. 지방보조금 항목: 민간경상사업보조, <u>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</u> , 민간자본사업보조 ※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%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.		비고 1~4. (현행과 같음) 5. 지방보조금 항목: 민간경상사업보조, <u>민간자본사업보조</u> ※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%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.

현행		개정안
2. 세입 확충		2. 세입 확충
반영항목	산정방식	산정방식
가. 지방세 징수율 제고	① (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× 180% 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누적 50% 단체 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※ ①,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·징수 실적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·지방소비세 부과·징수 실적 및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<u>담배소비세</u> 부과·징수 실적을 제외한다. ※ “①+②”의 결과값을 반영하되,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	① (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× 180% 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누적 50% 단체 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※ ①,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·징수 실적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·지방소비세 부과·징수 실적 및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<u>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</u>의 부과·징수 실적을 제외한다. ※ “①+②”의 결과값을 반영하되,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
나. 지방세 체납액 축소	① (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-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) × 180% ※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과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 및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<u>담배소비세</u>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.	① (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-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) × 180% ※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과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 및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<u>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</u>의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.

	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% 단체 체납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※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. ※ “①+②”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,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	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% 단체 체납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※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. ※ “①+②”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,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
다. 경상세의 수입 확충	(생략)	(현행과 같음)
라.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① (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) × 180% ※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. 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% 단체 체납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※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. ※ “①+②”의 결과값을 반영하되,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	① (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) × 180% ※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. ※ <u>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하는 비용의 체납액은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.</u> ② (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% 단체 체납징수율 -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) ×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※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. ※ “①+②”의 결과값을 반영하되,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.
마. 적극적 세원 관리	(생략)	(현행과 같음)
바. 지방세 감면액 축소	(생략)	(현행과 같음)